

부산고등법원 2018. 9. 20 선고 2017나5404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

변 론 종결 2018. 8. 23.

판결 선고 2018. 9. 20.

제 1 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6가합1994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84,242,515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2007. 12. 18. 접수 제7009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2007. 12. 18. 접수 제7009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J빌라 소유권 취득 경위

1) 소외 K은 부산 동래구 L 등 4필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업무시설및 공동주택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다세대주택인 J빌라(이하 '이 사건 J빌라'라고 한다)를 신축하였고,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라 2007.6. 20. 위 건물에 관하여 K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이하 그 대표자 또는 개인들과의 구별을 위해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2007.1. 12. 부동산 건설 · 건축 ·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J빌라25세대(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총 20세대를 포함하여 104호, 202호, 403호, 801호,802호 등 25세대)에 관하여 2007. 6. 27.부터 2007. 7. 2.까지 원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원고 회사는 2007. 12. 18. C에게 부산지방법원 등기와 접수 제70094호로 위 25세대중 104호를 제외한 24세대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회사,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J빌라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등

1) 원고 회사는 2011. 10. 26. F에게 이 사건 J빌라(위 25세대를 포함하여 총 26세대)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4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F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4억 원으로 합의하고 위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4억 원을 포함하여 가등기 말소, 허가자 명의 변경비용 등으로 합계 6억 5,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먼저 지급하되 세입자 정리, 건축물의 준공을 책임지며, 잔금은 가등기 말소 후 즉시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다(을 5호증).

2) C은 2012. 1. 16. 원고 회사 및 F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이하 '이 사건 피담보채무' 또는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라 한다)를 즉시 변제할 경우 그 채무액을 2억 원으로 감액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F은 이를 바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2. 3. 30. C에게 '2012. 4. 20.까지 3억 원을 변제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2012. 4. 30.까지 원래대로 4억 원을 지급하며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을 6호증)를 작성해주었다.

라. F의 원고 회사 인수 등

1) 그 후 F은 이 사건 J빌라를 매수하는 대신 원고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여 당시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주주인 E로부터 원고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 F은 원고 회사의 인수절차를 마치기 직전인 2012. 9. 7. 계약당사자를 원고 회사, 그대표자를 인수절차를 마친 후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기할 자신의 누나인 I으로 표시하여 C의 대리인인 E에게 '원고 회사를 인수한 후 법적인 분쟁을 하지 않을 것이며 아직지급하지 못한 이 사건 피담보채무 4억 원을 지급한다'는 각서(을 7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2) F은 원고 회사 주식을 모두 인수한 후 2012. 9. 11. 자신의 누나인 I 을 사내이사로 등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서에 '2012. 9. 11. 대표자 변경을 하였으나 모든 인감은 전 인감증명으로 대체한다'고 기재하였다.

마.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등기 및 피고의 배당금 수령 등

1) C은 2013. 2. 20.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목적물 중 202호, 403호, 801호, 802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부산지방법원 M,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라 한다)에서 77,613,478원을 배당받았고, 2015. 8. 5. 이를 수령하였다.

3) 원고 회사는 2016. 6. 1.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피고의 이 사건 피담보채무 수령 거절을 이유로 138,162,164원을 변제공탁하였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년 금제1078호). 피고는 2016. 6. 7.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5, 8호증, 을 1 내지 11,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E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받았는데, E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피담보채무도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피담보채무는 원고 회사가 C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아니라 E가 C에게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이다. E가 개인적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원고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은, E와 원고 회사 사이의 자기거래로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E의 배임적 대리행위로서 무효이다.

3) ① 설령 이 사건 피담보채무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존재하더라도, 그 피담보채무액은 2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F이 이를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개인적으로 C과 '2012. 4. 20.까지 3억 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2012. 4.30.까지 4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위약금 약정을 하였다. 원고 회사는 이러한 위약금 약정을 추인하거나 적법한 대표자가 이를 인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 회사에 효력이 없다. ② 만일 위약금 약정이 원고 회사에 효력을 미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과다하므로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

4) 피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77,613,478원의 배당금과 원고 회사가 변제 공탁한

138,144,007원을 수령하여 2억 원을 넘는 돈을 변제받았으므로 이 사건 피담보채무는 소멸하였다. 나아가 원고 회사는 추가로 이 사건 피담보채무의 실제 채권자인 E에게 6,880만 원을 변제하였는바, 만일 이 사건 피담보채무가 일부 남아 있다면 피고는 원고 회사로부터 잔존 피담보채무를 변제받은 다음 원고 회사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 1) C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과 함께 피담보채권인 C의 원고 회사에 대한 확정채권 4억 원을 양도받았다. 피고와 E와의 거래 관계는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원인관계에 불과하므로 그 거래 관계를 들어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 2) C이 대여한 돈이 이 사건 J빌라를 건축하는 데 사용된 이상 원고 회사의 대표인E가 C과 체결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유효하고 그 피담보채무액은 4억 원이 다.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는 행위이거나 배임적 대리행위라고 하더라도 제3자인 C은 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 회사는 C으로부터 이를 양도받은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 3) F은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피담보채무 4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방편으로 원고 회사를 인수하였고,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C에게 4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 회사에 그 약정의 효력이 미친다.

3. 쟁점별 판단

가. 이 사건 피담보채무의 내용 및 범위

1) 피담보채무의 원인 및 확정된 액수

기초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10호증, 을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E는 원고 회사의 대표로서 C으로부터 이 사건 J빌라 매수 자금 등으로 차용한 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 사건 피담보채무는 원고 회사의 C에 대한 차용금인 사실, 피고가 C으로부터 4억 원으로 확정된

피담보채권을 양도받고 이 사건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C은 사돈관계인 E의 요청으로 원고 회사의 설립 전후에 걸쳐 위 J빌라 매수자금을 대여해주었다. E는 원고 회사 설립 후 그 대표로서 2007. 12. 18. C과 원고 회사의 위 차용금을 피담보채무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위 근저당권설정 이후인 2008. 4. 15.경까지 원고 회사에 합계 2억 8,000만 원 상당을 대여해주었다

② F은 2011. 10. 26.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J빌라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4억 원임을 합의하고 원고 회사에 매매대금으로 먼저 위 4억 원을 포함하여 합계 6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③ F은 이후 원고 회사의 대표이자 주주인 E로부터 원고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기 로 합의한 상태에서 향후 원고 회사의 대표로서 2012. 9. 7. C에게 이 사건 피담보채무 4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고, 원고 회사의 주식을 모두 인수한 후인 2012. 9.11. 원고 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이를 재차 확인하였다.

④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C을 상대로 이 사건 피담보채무액을 다투거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후순위 근저당권자인D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거나 그 피담보채권액이 2억 원에 불과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합108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14. 9. 4.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4억 원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가) 원고 회사는 E가 C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차용한 후 그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E와 원고 회사 간의 자기거래에 해당하거나 E의 배임적 대리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한 다

나) 살피건대, ⑦ C이 원고 회사의 설립 전부터 E에게 돈을 송금하였으나, E는 이 사건 J빌라의 매수 자금 명목으로 이를 차용한 점, L C은 원고 회사 설립 이전뿐만아니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같은

명목으로 돈을 대여해온 점, c 원고 회사는 부동산건설 · 건축 ·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설립 후 원고 회사 명의로 이 사건 J빌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E는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C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점, @ C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에도 원고 회사에 돈을 대여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피담보채무가 원고 회사의 C에 대한 차용금채무라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피담보채무가 E의 C에 대한 개인적 채무임을 전제로 하여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거나 E의 배임적 대리행위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 회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피담보채무의 소멸 여부

1)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원인이 된 채무의 소멸로 이 사건 피담보채무도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원인이 된 E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피담보채무도 소멸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원인이 된 채권 또는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도 소멸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위주장은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피담보채무 소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피담보채무 중 2억 원이 위약금인지 여부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피담보채무가 본래 2억 원으로 확정되었는데, F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개인적으로 2012. 4. 20.까지 3억 원, 2012. 4. 30.까지 4억 원을 지급하기 로 약정한 것이므로 이는 위약금 약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이 원고 회사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4억 원으로 확정되어 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피담보채무가 2억 원으로 확정되었다는

원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C이 원고 회사 및 F에게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즉시 변제할 경우 그 채무액을 2억 원으로 감액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F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원래대로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C의 위와 같은 감액의 의사표시 또는 약정은 즉시 변제를 조건으로 한 채무 일부의 면제 또는 감액 약정에 불과하고, F이 이를 즉시 변제하지 못하여 면제 또는 감액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이를 위약금 약정이라고 볼 수 없다. 위약금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 회사의 주장들은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은 77,613,478원을 수령하였고,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고 회사가 변제 공탁한 138,144,007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를 이 사건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면, 이 사건 피담보채무는 184,242,515원(= 4억 원 - 77,613,478원 - 138,144,007원)이 남게 된다.

(2) 원고 회사는 E에게 6,880만 원을 송금하여 위 금액 상당을 추가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피담보채권자는 C이고, 피고가 C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E에게 송금한 돈이 이 사건 피담보채무의 변제라고 볼수 없고 달리 위 돈을 이 사건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송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변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피담보채무는 184,242,515원이 남아 있으므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변제로 전부 소멸하였다는 원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회사는 피담보채무가 일부 남아 있을 경우 그 잔존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로부터 위 잔존 피담보채무 184,242,515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 회사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근저당권의 잔존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장래이행의 소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이유

재판장 판사 윤강열, 판사 유정우, 판사 이 성

목록(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L, N, O, P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번호 : 1 - 101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1층 101호 46.0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부산광역시 동래구 L 대 151㎡
2. 부산광역시 동래구 N 대 291㎡
3. 부산광역시 동래구 O 대 47㎡
4. 부산광역시 동래구 P 대 19㎡

2.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L, N, O, P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번호 : 1 - 103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1층 103호 53.5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부산광역시 동래구 L 대 151㎡
2. 부산광역시 동래구 N 대 291㎡
3. 부산광역시 동래구 O 대 47㎡
4. 부산광역시 동래구 P 대 19㎡

3.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L, N, O, P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번호 : 2 - 201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2층 201호 46.0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부산광역시 동래구 L 대 151㎡
2. 부산광역시 동래구 N 대 291㎡
3. 부산광역시 동래구 O 대 47㎡
4. 부산광역시 동래구 P 대 19㎡

4.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L, N, O, P

건물의번호 : 2 - 203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 2층 203호 53.50㎡

- | | |
|----------------|---------------------|
| 1. 부산광역시 동래구 L | 대 151m ² |
| 2. 부산광역시 동래구 N | 대 291m ² |
| 3. 부산광역시 동래구 O | 대 47m ² |
| 4. 부산광역시 동래구 P | 대 19m ² |

5.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L, N, O, P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번호 : 2 - 204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2층 204호 46.0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 | | | |
|----------|-------|---|-------------------|
| 1. 부산광역시 | 동래구 L | 대 | 151m ² |
| 2. 부산광역시 | 동래구 N | 대 | 291m ² |
| 3. 부산광역시 | 동래구 O | 대 | 47m ² |
| 4. 부산광역시 | 동래구 P | 대 | 19m ² |

6.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L, N, O, P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번호 : 3 - 301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3층 301호 46.0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 | |
|----------------|---------------------|
| 1. 부산광역시 동래구 L | 대 151m ² |
| 2. 부산광역시 동래구 N | 대 291m ² |
| 3. 부산광역시 동래구 O | 대 47m ² |
| 4. 부산광역시 동래구 P | 대 19m ² |

7.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L, N, O, P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번호 : 3 - 302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3층 302호 53.5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부산광역시 동래구 L 대 151㎡
2. 부산광역시 동래구 N 대 291㎡
3. 부산광역시 동래구 O 대 47㎡
4. 부산광역시 동래구 P 대 19㎡

8.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L, N, O, P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번호 : 3 - 303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3층 303호 53.5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부산광역시 동래구 L 대 151㎡
2. 부산광역시 동래구 N 대 291㎡
3. 부산광역시 동래구 O 대 47㎡
4. 부산광역시 동래구 P 대 19㎡

9.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L, N, O, P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번호 : 3 - 304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3층 304호 46.0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부산광역시 동래구 L 대 151㎡
2. 부산광역시 동래구 N 대 291㎡
3. 부산광역시 동래구 O 대 47㎡

4. 부산광역시 동래구 P 대 19m²

10.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L, N, O, P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번호 :	4 - 401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4층 401호 46.0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 | |
|----------------|---------------------|
| 1. 부산광역시 동래구 L | 대 151m ² |
| 2. 부산광역시 동래구 N | 대 291m ² |
| 3. 부산광역시 동래구 O | 대 47m ² |
| 4. 부산광역시 동래구 P | 대 19m ² |

11.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L, N, O, P

건물의번호 : 4 - 402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4층 402호 53.5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 | |
|----------------|---------------------|
| 1. 부산광역시 동래구 L | 대 151m ² |
| 2. 부산광역시 동래구 N | 대 291m ² |
| 3. 부산광역시 동래구 O | 대 47m ² |
| 4. 부산광역시 동래구 P | 대 19m ² |

12.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L, N, O, P

건물의번호 : 4 - 404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4층 404호 46.0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 | | | | |
|----------|-----|---|---|-------------------|
| 1. 부산광역시 | 동래구 | L | 대 | 151m ² |
| 2. 부산광역시 | 동래구 | N | 대 | 291m ² |
| 3. 부산광역시 | 동래구 | O | 대 | 47m ² |
| 4. 부산광역시 | 동래구 | P | 대 | 19m ² |

13.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L, N, O, P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번호 : 5 - 501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5층 501호 46.0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 | |
|----------------|---------------------|
| 1. 부산광역시 동래구 L | 대 151m ² |
| 2. 부산광역시 동래구 N | 대 291m ² |
| 3. 부산광역시 동래구 O | 대 47m ² |
| 4. 부산광역시 동래구 P | 대 19m ² |

14.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L, N, O, P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번호 : 5 - 502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5층 502호 53.5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 | |
|----------------|---------------------|
| 1. 부산광역시 동래구 L | 대 151m ² |
| 2. 부산광역시 동래구 N | 대 291m ² |
| 3. 부산광역시 동래구 O | 대 47m ² |
| 4. 부산광역시 동래구 P | 대 19m ² |

15.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L, N, O, P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번호 : 5 - 503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면 적 : 5층 503호 53.50㎡

1. 부산광역시 동래구 L 대 151㎡
2. 부산광역시 동래구 N 대 291㎡
3. 부산광역시 동래구 O 대 47㎡
4. 부산광역시 동래구 P 대 19㎡

16.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L, N, O, P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번호 : 5 - 504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5층 504호 46.0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부산광역시 동래구 L 대 151㎡
2. 부산광역시 동래구 N 대 291㎡
3. 부산광역시 동래구 O 대 47㎡
4. 부산광역시 동래구 P 대 19㎡

17.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L, N, O, P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번호 : 6 - 601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6층 601호 83.6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부산광역시 동래구 L 대 151㎡
2. 부산광역시 동래구 N 대 291㎡
3. 부산광역시 동래구 O 대 47㎡
4. 부산광역시 동래구 P 대 19㎡

18.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L, N, O, P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번호 :	6 - 602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6층 602호 83.6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 | |
|----------------|---------------------|
| 1. 부산광역시 동래구 L | 대 151m ² |
| 2. 부산광역시 동래구 N | 대 291m ² |
| 3. 부산광역시 동래구 O | 대 47m ² |
| 4. 부산광역시 동래구 P | 대 19m ² |

19.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L, N, O, P

건물의번호 : 7 - 701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7층 701호 83.6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 | |
|----------------|---------------------|
| 1. 부산광역시 동래구 L | 대 151m ² |
| 2. 부산광역시 동래구 N | 대 291m ² |
| 3. 부산광역시 동래구 O | 대 47m ² |
| 4. 부산광역시 동래구 P | 대 19m ² |

20.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L, N, O, P

건물의번호 : 7 - 702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7층 702호 83.6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 | |
|----------------|---------------------|
| 1. 부산광역시 동래구 L | 대 151m ² |
| 2. 부산광역시 동래구 N | 대 291m ² |
| 3. 부산광역시 동래구 O | 대 47m ² |
| 4. 부산광역시 동래구 P | 대 19m ² |

-이상-